

한국 내 예멘 난민이슈에 대한 이해

The Understanding of the Issue of Yemenirefugees in Korea

저자
(Authors) 권지윤
Jee Yun Kwon

출처
(Source) [Muslim-Christian Encounter 11\(2\)](#), 2018.9, 81-112(32 pages)

발행처
(Publisher)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TORCH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41379>

APA Style 권지윤 (2018). 한국 내 예멘 난민이슈에 대한 이해. *Muslim-Christian Encounter*, 11(2), 81-112

이용정보
(Accessed)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220.67.255.***
2021/02/08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 내 예멘 난민 이슈에 대한 이해

권지윤*

I. 서론

II. 난민의 다양한 의미

III. 국내 예멘 난민의 상황

IV. 국내체류 예멘난민을 둘러싼 이슈

V. 결론: 한국교회의 선교적 태도: 배제와 두려움을
넘어서 포용으로

* 한국이슬람연구소 부소장

I. 서론

2018년 유엔난민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지구상 110명중 1명이 난민으로 추방당하거나 망명을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¹ 이러한 세계적 흐름 가운데 매해 늘어가는 난민의 수를 생각할 때 이제는 난민문제를 지역적인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시대에 이르렀다. 난민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국내 난민에 대한 이슈는 2018년 여름 예멘인 448명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입국해² 들어와 난민신청을 함으로서 뜨겁게 달궈지기 시작했다. 난민에 대한 정확한 의미조차 파악하기 전에 국내 여론들은 앞을 다투어 유럽의 테러리즘이나 포퓰리즘에 치우친 난민정책 등을 제대로 된 해석 없이 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여론의 영향은 무슬림 난민에 대한 무조건적 우려와 염려를 가져왔고, 게다가 이미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단일민족문화의 잔재까지 더해 우리사회에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심각하게 거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난민들에게 전쟁과 질병 그로 인한 심각한 식량위기로 죽음에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라는 여론이 강하게 일어났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처한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배제와 차별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한국교회가 이 땅에 찾아온 무슬림 난민들을 위해 선교적 차원에서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선교적 행동을 해야할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1 https://www.etimes.net/Service/etimes_2011/ShellView.asp?ArticleID=2018061916333002163 (accessed on 16th Aug. 2018).

2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 (accessed on 3rd Aug. 2018)

문제이다. 이러한 긴급한 사회적 난제 속에 이 글은 난민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고, 현재 이들 무슬림 난민들이 국내에서 처한 현실에 대하여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타자된 난민들을 포용하는 객관적이고 바른 선교적 태도를 갖기 위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II. 난민의 다양한 의미

1. ‘난민’의 일반적 의미

일반적으로 “난민은 전쟁, 기아, 재해 등으로 곤경에 빠진 이주민 또는 곤경을 피하여 원래의 거주지를 떠나 대피하는 피난민으로서 거처와 식량 등 구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의미한다.³ 즉 ‘난민’이란 일반적 의미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구호 등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난민’의 법률적 의미

법률적 의미로 난민은 ‘출신 국가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다른 나라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1951년 유엔 난민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우리나라 난민 법은 난민을 국적국 또는 거주국 이외

3 한충희, “전 세계 난민 상황과 정책,”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9 no.1 (March, 2016), 66.

의 국가에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로 정의한다.⁴

다시 말하자면, 난민협약국에 도달하여 보호를 구하는 잠재적인 난민을 난민신청자(Asylum-Seeker)라하며, 난민신청자의 주장을 심사하는 제도를 난민인정절차(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RSD절차)라고 하고, 이러한 제도와 그 절차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난민(Refugee)이라고 칭한다.

3. 국내 ‘난민 의미’와 관련된 이슈

1) 난민/인도적 체류허가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아시아 여러 나라 가운데 처음으로 2013년 7월부터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 국내법제를 정비한 1994년 4월 처음 난민 신청을 받았으며, 이후 2018년 6월 말까지 누적 난민 신청자는 4만 470명이다. 이 가운데 2만 361명에 대한 심사를 끝냈는데 849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난민 인정률이 4%로 극히 낮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 인도 심사대상자의 약 7.6%인 1550명에 지나지 않는다.⁵

우리나라는 난민협약에 가입했으므로 난민인정절차를 통해 인정된 난민에게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박해의 위협이 있는 국적국으로부터 강제송환당하지 않을 권리와 법적지위, 사회보장적 혜택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여 난민으로 하여금 협약국인 국내에서

4 한충희, “전 세계 난민 상황과 정책,” 57.

5 “한국 난민법 5년전 시행... 난민 인정률 4.1%뿐” <http://www.hani.co.kr/arti/PRINT/849797.html>(accessed on 10th July 2018).

살아가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난민 인정사유를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난민제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인도적 견지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난민협약국과 마찬가지로 ‘인도적 체류허가(Humanitarian Status)’라는 제도를 보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⁶ 우리나라의 경우 난민법(제 2조 제 3호)에도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문 등의 비 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으로 돌려보낼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이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에는 인도적인 국내체류허가를 하고 있다. 이외에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로 내전을 사유로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호를 요청한 시리아 국민 대부분이 내전을 사유로 난민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는 난민지위부여보다는 인도적 체류허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⁷

2) 무사증제도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 청원에서 무비자 입국을 예멘 난민입국 문제와 연결시켜 청원인이 다음과 같이

6 유럽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인도적 체류자에게 기타(G-1)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는 달리 취업허가 외엔 사회적 지원이 없다. 인도적 체류자에게 보험이나 기초생활급여 등 사회의 온갖 공적부조는 제외되어 있다. “한국 난민법 5년전 시행... 난민 인정률 4.1%뿐” <http://www.hani.co.kr/arti/PRINT/849797.html>(accessed on 10th July 2018).

7 한충희 전 유엔차석대사는 한국이슬람연구소의 저널 *Muslim-Christian Encouter*를 통해 유엔의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전 세계의 난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난민의 상황과 그 정책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정보과 통찰력있는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의 글 “전 세계 난민 상황과 정책”을 참고하여 살펴보기 바란다.

이슈화 하였다.

“무비자 입국에 관해서 원희룡 제주지사께서는 2002년 국제자유 도시를 추구하면서 들어온 제도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보완책을 낼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현재 그에 따른 사회문제와 범죄, 치안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강구책은 없는 것이지요? ... 그렇기에 과연 이 상황에서 예멘 난민신청이 허가된 것과 이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되고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 적절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무사증제도는 2002년부터 관광객의 증가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도 입국을 허용한 제도이다. 다른 말로 무비자 입국 제도라고도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한 달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⁸ 따라서 무사증제도의 본 목적을 살펴보면, 이번 제주 예멘인 대량 입국 사건으로 인하여 붉어진 무사증제도 폐지 논란은 실질적으로 난민법과 그 관계성을 따져 폐지나 아니냐를 논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⁹

그러나 정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예멘은 제주 무비자입국 예외 국가(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로 추가 조치하여 추가적인 입국이 중단된 상태이다.¹⁰

8 [네이버 지식백과] 무사증 제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6444&cid=43667&categoryId=43667>(accessed on 15th Aug. 2018)

9 http://news.khan.co.kr/kh_news/khanmartmview.html?artid=2018062221005&code=620117(accessed on 8th Aug. 2018).

10 유엔난민기구 채현영 법무담당관은 한계레 21과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예멘의 무

경제특구로서 경제적 발전과 효과를 위해 실행되고 있는 제도가, 무분별하게 난민신청자들에게 이용되어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우려 속에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관광활성화라는 무사증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입국자가 많은 12개 나라를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폐지는 제주도 특별차지구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에 법무부가 단독으로 제주도와 협의 없이 제도의 폐지나 개선을 추진할 수 없기에 두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Ⅲ. 국내 예멘 난민의 상황

1. 세계적 난민 발생흐름과 예멘 난민 발생 배경

1) 세계적 난민 발생 흐름

유엔난민기구의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685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으며, 이 중 1620만 명이

사증 입국 예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예멘을 무사증 입국 제한 국가에 포함시킨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국가가 비자(사증) 정책을 가지고 있고, 누구를 입국 허용할지는 해당 국가의 권한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에서 입국을 안 시켜주면 난민들은 갈 곳이 없고 국내 실항민으로 떠돌 수 있어요. 난민협약은 기본적으로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이며 난민을 수용할 여력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한국은 난민을 수용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 난민 수용 여력 있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5544.html (accessed on 8th Aug. 2018). 국내실항민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난민 인정사유 이외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국적국을 떠난 사람을 ‘이주민(Migrant)’이라 부르며, 보다 나은 경제여건 및 생활여건을 추구하고자 다른 나라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제적 이주민’이라고 부른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자신의 집과 삶의 터전을 떠난 상황을 개념적으로 ‘강제적 이산(Forced Displacement)’이라 부른다. 특히, 이들 중에서 외국이 아닌 자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피난한 경우를 국내 난민 또는 실항민(ID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이라 부른다. 한충희, “전 세계 난민 상황과 정책,” 57-58.

지난해 새롭게 추가됐다. 유엔난민기구는 시리아 내전이 전 세계적으로 난민 발생에 큰 역할을 했고 콩고민주공화국과 남 수단, 미얀마와 같은 국가들에서도 수많은 강제이주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중 전쟁과 박해로 인해 국경을 넘어 자국을 떠난 난민의 수는 2540만 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6년보다 290만 명 증가한 수치이다. 종합하면 이 숫자는 지구상 110명 중 1명이 난민으로 추방되거나 망명을 요청하고 있는 것과 같다.¹¹

“‘UNHCR’ 전 세계 난민 수 5년래 최대...6850만 명”이라는 보도에서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대표는 “수개월 안에 새로운 글로벌 난민 계획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라며 “14개국은 이미 난민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오늘날 나의 메시지는 이를 지원하라는 거다. 아무도 자신의 선택에 의해 난민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돕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¹² 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충희 주 유엔 차석대사는 저널 *Muslim-Christian Encounter*에 게재된 그의 글 “전 세계 난민 상황과 정책”에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담과 책임공유(Burden and Responsibility Sharing)를 위한 새로운 연대 정신(Solidarity)이 필요하며, 강제적 이동(Forced Displacement)이 인도적 문제와 개발 문제 모두에 함의(Implications)를 갖는 것이 국제 사회와 유엔에서 논의의 흐름이다. 따라서 난민 송출국의 상황을 개선하고 난민들이 본국으로 복귀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¹³ 라

11 https://www.etimes.net/Service/etimes_2011/ShellView.asp?ArticleID=2018061916333002163 (accessed on 16th Aug. 2018).

12 https://www.etimes.net/Service/etimes_2011/ShellView.asp?ArticleID=2018061916333002163 (accessed on 16th Aug. 2018).

13 세계적인 난민문제에 대한 흐름과 바람직한 해결방법에 대한 논의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한충희, “전 세계 난민 상황과 정책,” 62을 참고하라.

고 전했다.

두 사람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난민 이슈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하여 다시한번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더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해 있는 예멘난민들의 문제도 세계적인 난민 흐름 중에 하나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기 시킨다.

2) 예멘 난민 발생원인

대부분의 난민 발생원인은 새로운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속되는 정치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처럼 테러와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곳에서의 이주문제이다. 또는 인권유린, 부실하고 불안정한 정치(Bad Governance), 기회 박탈, 공공서비스의 실패, 지속되는 빈곤 등이다. 예멘도 이 여러 가지 난민 발생원인을 포함하고 있는 나라이다.¹⁴ 예멘은 3년째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내전으로 인해 인구의 3분의 2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지구상에 가장 비참한 곳 중 하나이다.¹⁵

예멘 분쟁은 2011년 중동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의 여파로 2012년 2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살레 전 대통령이 이후 후티(Houthi)로 대표되는 북부 세력과 손잡고 남부를 공격하자 남부가 이에 저항하며 벌어진 내전으로부터 발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전은 사우디와 UAE가 주도하는 아랍동맹이 예멘사태에 개입하면서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는 아랍동맹이 후티반군을 지원하는 배경이 이란이라고 주장하며 이란을 후티반군

14 Ibid., 63.

15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17001&plink=ORI&cooper=NAVER(accessed on 5 Aug. 2018).

의 배후세력으로 끌어들이면서 아랍동맹(수니파) vs 이란(쉬아파)이라는 구도를 형성하였고 이에 따라 그 규모가 커지고 더욱 복잡해졌다. 예멘 데이터 프로젝트는 2018년에 6월을 기준으로 사망자가 이미 1만 명이 넘었고 2016년부터 따지면 무려 4만 4,0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발표한바 있다.¹⁶

또한 AP통신에 등에 따르면 2018년 7월 미국의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예멘의 무장전투와 특수한 약조건 등의 이유로 예멘 출신사람들의 보호신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던 1250명의 예멘인이 2020년 3월 20일 까지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부터 예멘 내전 상태는 더욱 악화된 상태다. 유엔은 “1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죽고 전국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¹⁷

주변 산유국들과 달리 자원도 없고, 물마저도 귀한 중동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예멘은 계속되는 내전과 독재정치로 삶의 터전인 거주지를 떠나는 이주가 불가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지난 3년 동안 사우디와 UAE, 이란 등 지역 패권국들의 멈추지 않는 군사 개입은 이러한 예멘을 인도주의적 재앙으로까지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늘날의 예멘의 비참한 현실, 난민의 긴 행렬의 끝에는 ‘군사동맹’ ‘연합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중동의 패권경쟁 세력을 훈련 무장시키는데 무기판매로 도움을 준 서구의 여러 나라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눈감아선 안 되는 현실에서 부담과 책임을 공유하는 자

16 <http://www.hankookilbo.com/v/5ad9b67609c14670977954a59b05c309> (accessed on 5th Aug. 2018).

1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01429&code=61131111&cp=du> (accessed on 9th Aug. 2018).

리에 서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 국내 예멘 난민들의 처한 상황과 필요

1) 교육 상황

유엔난민기구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난민 중 절반이 18세 이하 아이들로 추정된다. 이들 중 절반만이 초등교육을 받고 있으며 25%만이 중등교육을 1%만이 고등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⁸ 전 세계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동의 상당수가 분쟁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대부분의 분쟁지역으로부터 난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수의 난민 아동, 청소년들이 교육의 기회마저 얻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15년 4월에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된 인천선언에서는 국내피난민을 포함하여 아동, 청소년을 위한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는 교육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공약한 바 있다.¹⁹

우리나라의 경우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기타(G-1-5)비자를 받고 난민인정심사기간 난민법 제 43조에 의하여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권리가 부여된다. 그러나 난민 인정심사기간 여러 가지 교육의 시스템상의 어려움으로 교육을 받기란 쉽지 않다.²⁰

소수의 국내 난민 아이들은 종교기관 등에서 그들을 돕는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한국어와 영어 등을 배우는 것으로 정식교육

18 <https://www.unhcr.or.kr/education/#firstPage> (accessed on 9th Aug. 2018).

19 한충희, “전 세계 난민 상황과 정책,” 53.

20 국내 난민의 현황과 사회적 종교적 취약성에 관해서는 이일 “한국 내 무슬림 난민의 현황, 난민제도의 이해 및 한국 기독교 교회의 과제,”를 참고하여 보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이일변호사는 난민문제에 관한 전문가로서 지속적으로 난민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변호사로서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9 no.1 (March, 2016):92에 글을 게재하여 독자들에게 국내 난민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렸다.

을 대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어려운 취업상황

난민신청자가 난민 인정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허가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난민 법 제 40조 2항에 근거하여 가진다. 그러나 이렇게 취업허가를 얻더라도 언어적 장벽 및 비자(G1)타입의 장벽으로 인하여 단순노무직 외에는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번 제주 예멘인들의 경우 이렇게 취업에 장벽에 있는 상황에서 지난 4월 30일 제주 예멘인에게 제주도 밖 이동을 금지한 조치(출도제한)가 내려졌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취업하지 못하거나 얻었던 단순노무직 일자리마저 잃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예멘인들이 가지고 왔던 돈을 모두 소진하고 더 이상 잠잘 곳을 잃어 길거리로 나오는 경우가 계속해서 이슈화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난민심사가 지체되고 제주도 밖 이동제한 조치가 장기화 되면서 노숙시도가 계속 사회문제화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 예로서 취업한 예멘인들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인 업주²¹ 인해 어려움을 겪고 일자리를 스스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하기도 한다. 두 달 전 제주에 온 예멘인 파로(32)는 삼겹살집에서 일하다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업주의 이야기에 일을 그만뒀다. 그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 무슬림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며 “두 달 동안 일은 없고 돈은 떨어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21 이슬람이 한국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시기는 한국전쟁(1952년)이후로 볼 수 있지만, 한국 이슬람이 아직은 한국사회에 소수의 종교단체로(전 국민의 약 3%정도) 존재하며, 한국 사람들에게 ‘이슬람’이라는 문화와 종교는 상세하고 널리 친화적으로 불교나 기독교와 같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아직 무슬림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2018년 7월 8일 기준으로 제주 체류 예멘인 486명 중 247명이 도내 요식업과 농·어업 분야에 임시 취업했으며, 6월 14, 18일 취업설명회 직후 382명이 취업한 것과 비교하면 135명(35.3%)이 줄었다고 발표했다.²²

3) 사회적 어려움

예멘 난민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을 때 가장 크게 미디어를 달군 부분 중 하나가 어떤 이가 ‘진정한’ 난민인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이를 가려내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허위난민’ vs ‘진짜난민’이라는 용어를 우리사회에 만들어내기까지 하였다. 유럽에서 발생되었던, 특별히 2015년 파리테러사건²³, 2015년 연말 독일 쾰른에서의 난민·이민자에 의한 범죄가 부각되면서 생겨난 난민공포증(Xenophobia)이 예멘난민 사태와 맞물려 우리사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난민공포증은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난민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일회성 자선(Charity)행위로 여기거나, 더 나아가 수용국의 짐으로 그리거나 정책의 수동적인 대상으로²⁴ 여기고, 테러리즘의 대한 공포가 난민에 대한 편견으로 자리 잡아 가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에 최근의 국내 상황은 갑작스럽게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입국하였고, 이에 대하여 난민신청브로커와의 연관설, 난

22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80720020055018> (accessed on 9th Aug, 2018).

23 파리테러사건의 경우 많은 전문가들은 난민 정책 실패에서 발생한 테러라기보다는 프랑스의 동화정책의 실패에서 오는 테러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다.

24 이일 “한국 내 무슬림 난민의 현황, 난민제도의 이해 및 한국 기독교 교회의 과제,” 95.

민신청자 상당수가 가짜난민일 수 있다는 루머 등과 같은 미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여러 미디어를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태원에서 예멘 난민을 돕는 김기학 이주민지원센터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멘 난민을 ‘진짜’와 ‘가짜’로 나누는 프레임은 문제라고 지적했다.²⁵ “정치적인 문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만 진짜 난민인가. 고국에 가면 굶어죽거나 맞아 죽거나 전쟁으로 죽게 되는 예멘 난민 같은 사람들도 절박한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대표는 “다만 전쟁이 없는 몇몇 국가 출신 외국인들이 난민법의 빈틈을 찾아 기획 입국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가 이런 기획 난민들을 가려내다보니 정작 심사는 길어지고, 예멘에서 온 난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²⁶

이러한 난민공포증은 최근 예멘난민사태와 더불어 이슬라모포비아(Islamophobia)로 그 분위가 더욱 심각해진 것이 사실이다. 최근 국내에 난민인정신청자 중 언론을 통해 보여지는 많은 수가 예멘인을 그 중심으로 시리아나 이집트 등의 이슬람국가 출신의 무슬림들이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여파로 난민과 무슬림테러리스트를 일반화시켜 이슬람을 종교로 가진 모든 무슬림을 테러리즘을 신봉하는 이슬람 테러리스트와 같은 무리로 이해하고 두려워하거

25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를 참고하면, “신청을 받으러 온 난민들이 진정 난민들일지도 의문이 있으며 가까운 유럽이 아닌 먼 대한민국까지 와서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바, 다시 재고하거나 엄격한 심사 기준을 세우거나 폐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라고 청원을 제기하고 있어 여론에서 허위난민과 진짜난민을 가르려는 여론이 상당했음을 엿볼 수 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 (accessed on 2nd Aug 2018).

26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32&aid=0002880052> (accessed on 9th July, 2018).

나 혐오하는 인식이 이슬람국가 출신의 난민 신청자들을 대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미디어를 통해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으며, SNS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난민공포증과 더불어 무리를 지어 확산되고 있다. 특징적으로 이러한 무리지음, 공동체 결성에 나이와 학력 등의 제한이 없이 한 가지의 이슬람에 대한 또는 난민에 대한 두려움이나 혐오, 공존을 반대하는 의견 등에 관한 일치, 같은 의견을 공유한다면 가능하기에 그 파급효과가 사회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시리아나 예멘 등 이슬람국가 출신 무슬림난민들이 겪는 고충은 모두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다음은 시리아 난민들을 돕는 인권활동가와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이다.²⁷

시리아에서 한국에 유학을 왔다가 시리아 난민들을 돕게 된 인권활동가 압둘 와합씨가 말했다. “IS(이슬람국가)아니냐, 테러리스트 아니냐 할까봐 옆 사람들(한국 사람들) 눈치 보고... 시리아 난민들은 한국사회에서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어해요.”

“어제 (시리아인들한테) 열심히 연락을 해도(인터뷰 허락이)안 돼서... 계속 설득해도.... “압둘 와합 사무국장은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이후 여러 언론사로부터 시리아 난민 인터뷰를 연결해달라는 “똑 같은 부탁”을 날마다 받지만, 어떤 시리아인도 ‘무서운 한국’에서 선뜻 얼굴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압둘 와합 사무국장은 그의 인터뷰에서 “시리아분 옆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착해요. 난민들이 싫을 수도 있고

27 <http://h21.hani.co.kr/arti/PRINT/45601.html> (accessed on 9th July, 2018).

이슬람이 싫을 수도 있지만 곁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람’(무슬림 난민/시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니까 걱정이나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고요...라고 말하였다.

실제로 이들 이슬람권 난민들의 한국 적응 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이들은 한국사회의 분위기 즉 한국사회 일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혐오 즉 이슬라모포비아적 분위기를 말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슬람 또는 무슬림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위한 노력이나 지식이 전무후무한 상태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적인 시각에서 시리아인을 포함하여 현재 문제가 되는 예멘인이 대부분 전쟁의 피해 속에서 입국하여 한국 사회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이해하는 좀 더 신중한 태도를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 까 한다.

그 이후에 이들의 문화나 종교에 관하여 생각해보고 폭력과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얼마나 관련이 깊은지를 생각해봐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이슬라모포비아적 분위기를 점점 더 세차게 몰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유럽에서 동화 정책실패로 발생하는 난민 또는 무슬림 테러와 난민공포증이 국내에 갑작스럽게 닥친 제주예멘 난민대량 입국과 만나면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더 크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사회 일부에서 주장되는 이러한 두려움과 혐오는 실제적 사건과 개연성이 있는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하는 사실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객관적인 기준과 실제

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생각 즉 막연한 두려움은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사회가 난민과 무슬림들을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한다면, 이들은 난민으로서 우리와는 다른 삶의 자리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국제적인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IV. 국내체류 예멘난민을 둘러싼 이슈

1. '허위난민' 문제

제주도에 갑자기 예멘인 448명이 난민신청을 했는데, 이 숫자는 지난 26년간 누적 신청자보다 많은 규모였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제주 직항 항공편이 생기면서 비자없이 한 달간 체류가 가능한 제주도로 오게 된 것인데, 말레이시아 보다 한국에서 난민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취업과 교육의 기회가 더 나은 형편이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갑작스런 예멘인들의 제주입국과 더불어 난민신청은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이슈를 낳았다.

이러한 불편한 이슈는 결국 불법체류 수단으로 난민제도가 악용되어 국내에 난민의 수 특히 이번 경우에는 무슬림 난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이 우리사회에 정착 또는 인도적 체류자로서 또는 어떠한 지위라도 머물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여론형성 표현방법 통해 우리

사회가 국제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처지에 처한, 또는 우리와 다른 이들에 대하여 상당히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간 유지해왔던 난민법 자체가 국제적인 시류를 쫓거나 국내의 형편상 효율적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가장 크게 이슈화 되었던 문제는 현재의 난민법이 ‘허위 난민’을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시달리는 이들을 난민으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앞서 열거한 충분한 근거가 없이 예멘으로부터 온 난민신청자가 아닌 타 지역 난민신청자들의 경우 난민브로커 등을 통해서 난민지위를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허위난민’을 가려내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을 내 놓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⁸

1. 신원검증 강화 (난민 신청자의 SNS계정제출 의무화, 박해사유, 마약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 진행).
2. 정식 난민심사 절차 받을 수 없음-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재신청자,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명령받은 후 신청하는 등의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자.
3. 신청인이 심사기간 동안 본국 방문 시 신청철회로 인정함.
4. 난민브로커의 불법행위는 처벌조항을 명문화함.

난민법이 개정되고 심사가 엄격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일각에서는 수정된 난민법이 난민심사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이게

28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 (accessed on 3rd Aug. 2018).

하여 오히려 더 많은 난민브로커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여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 염려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난민신청자들도 심사가 끝날 때까지 사회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으며, 안정된 생활도 할 수 없이 불안정한 생활 가운데 계속되는 기다림으로 일관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도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보완책으로 심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전문통역인을 늘려 신청시작부터 심사의 각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문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난민신청자와 심사기관간의 투명성의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고 현재 불복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난민’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가려내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앞서 김기학 이주민지원센터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난민(예멘으로부터 온 난민신청자)을 ‘진짜’와 ‘가짜’로 나누는 ‘프레임’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난민법은 난민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난민을 ‘진짜’와 ‘가짜’로 나누는 ‘프레임’을 갖는다는 것은 난민에게 적절한 도움과 보호를 주는 것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수용국의 짐 더 나아가서는 정책의 수동적인 대상 또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려는 경향을 그 근저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지구상 110명 중 1명이 난민으로 추방되거나 망명을 요청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생각해볼 때 난민에 대한 지원

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에서 나라의 번영, 안보, 국제적 평화를 위한 장기적 투자를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새롭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²⁹

2. 종교, 문화적 이질감과 사회적 부적응문제

최근 예멘 난민 신청이 급증하면서 붉어진 문제 중 하나는 이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후 종교적,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부적응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난민들을 포함한 이주민들은 몸만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가지고 이동하며, 따라서 이주는 이주민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혼란스러우며 서로에게 적응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특히 한국사회는 단일민족국가라는 자부심을 오랫동안 강조하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적 현상에 대해 비판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문화적 이질감에 대한 거부, 피부색과 혼혈에 대한 편견, 여러 가지 유형의 문화적 갈등, 차별의 문제를 발생시켜왔던 것도 사실이다. 즉 단일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우리’와 ‘남’을 구별하면서 차별과 배제정책을 시행하여 온 것이다.³⁰

이러한 배경가운데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1990년대에서 2000년에 들어와 한국의 노동시장 개방과 맞물려 새롭게 등장한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소수자들을 사회구성원으로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단일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정부는 이에 맞는 정책을 의제화

29 한충희, “전 세계 난민 상황과 정책,” 76.

30 김영란, “다문화사회 한국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 정책,” 『한국사회』 제14집 1호 (2013년), 15.

시키기 시작했다. 지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13개 관련 부처가 한국사회가 급속히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³¹ 더 나아가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발표하여 “국제결혼의 증가 등 국가 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뿌리 깊은 단일민족 의식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 전반에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시켜 주류사회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고,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부적응과 가족 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법의 제정 이유를 밝히며 있다.³² 이때부터 정부와 각 지방단체 시민단체 등 사회기관에서는 이들을 돕는 많은 프로그램을 쏟아내었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많은 홍보도 하였다. 그 결과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도 차츰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은 낯설지 않은 모습이 되었다. 이미 우리사회는 단일문화가 아닌 다문화사회로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이미 다문화사회의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멘인들의 입국으로 난민신청자가 갑자기 늘어나 난민신청자뿐만 아니라 난민으로 국내에 정착한 이후 우리사회에서 이질적인 종교, 문화적 차이로 대한민국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그 갈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일부에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우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사회

31 김미나, “다문화 사회의 진행 단계와 정책의 관점: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 연구,” 『행정논』 총 제47권 4호 (2009년), 213.

32 Ibid.

가 다문화사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현상은 앞서 다루어졌듯이 난민공포증 중에 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들 예멘인들은 무슬림이기에 이슬라모포비아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가득 실은 여론은 이들 예멘인을 포함한 난민신청자 또는 난민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것 자체를 두려움 가득한 시각으로, 언제나 이들이 사회적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대상으로서 잠재적 범죄자로 여긴다. 즉 우리와 남을 구별하는 상당히 배타적인 시각은 이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에 심한 거부반응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현재 예멘인들과 관련된 이러한 두려움이나 염려의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생각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아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정확한 현상과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라 논리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우리사회에서 무슬림 난민을 포함하여 난민으로 인하여 과연 몇 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는지, 이러한 범죄가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유럽의 경우도 최근 폭력사태나 테러 등의 폭발범죄는 난민에 의한 범죄 보다는 이민자에 의한 범죄 즉 동화정책 실패로 인한 범죄가 월등히 많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다문화사회 안에서 배타적인 사회공동체로부터 쉽게 포용되거나 동화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존재했을 때 사회적 갈등이 생겨 그것이 사회적 범죄로 표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3년간 120만 명 정도의 난민을 수용한 독일은 난민의 사회통합을 최대 화두로 삼고 있다. 2006년 난민통합법을 마련해 난민을 상대로 언어교육과 취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난민이 갖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난민의 생활을 기본적으로 보호하면서 노동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매달 생활, 주거비, 의료보험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주택 우선공급 및 사회통합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들 모두가 난민의 사회통합이 빠를수록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며, 사회적으로도 안정적이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소속 파리경제대학원 등이 1985-2015년에 서유럽 15개국에 유입된 난민들이 미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난민 인정을 받고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3-5년이 흐르면 1인당 국민 총생산(GDP)증가와 세수증가에 도움이 되고, 더구나 실업률도 떨어뜨렸다고 한다.³³ 이러한 경제적 지원이 외에도 사회적 통합시스템은 정치,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입국사건으로 난민법을 제 정비하면서 사회통합문제를 위한 방안도 새롭게 정비하였다. 법무부 박상기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착 지원 및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만을 받는 존재로만 남지 않고 그들의 역량을 발휘해 자립을 마련하여 재정 및 사회질서 안전 면에서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련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³⁴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난민보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할 위치에 있다. 이미 우리사회가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3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1/0200000000AKR20180701054300082.HTML> (accessed on 17th July, 2018).

34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 (accessed on 3rd Aug, 2018).

서 발전을 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와 남을 나누는 차별과 배제, 배타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난민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하여 사회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국제사회의 발언권, 국제적 고립 등 국익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탈퇴나 난민법 폐지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주장을 하는 것 보다, 우리의 법과 질서 안에서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한국교회의 선교적 태도: 배제와 두려움을 넘어서 포용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대표의 말대로 아무도 자신의 선택에 의해 난민이 되지 않는다.³⁵ 유엔난민기구의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세계적으로 685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이 숫자는 지구상 110명 중 1명이 난민으로 추방되거나 망명을 요청하는 것과 같다.³⁶ 더 이상 우리는 난민에 대한 지원을 자선(Charity)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제는 국제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보는 시각으로 전환이 요청되는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며 절실한 시대적 요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는 상관없이 최근 제주 예멘 난

35 https://www.etimes.net/Service/etimes_2011/ShellView.asp?ArticleID=2018061916333002163 (accessed on 16th Aug. 2018).

36 https://www.etimes.net/Service/etimes_2011/ShellView.asp?ArticleID=2018061916333002163 (accessed on 16th Aug. 2018).

민 신청자들의 입국은 국내의 많은 불편한 이슈를 낳은 뜨거운 뉴스거리가 되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71만 4,875명이 참여해 국민적 관심이 다른 청원보다 상당했음을 증명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뜨거운 국민적 관심의 주요 이슈가 난민들이 우리사회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정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등을 비롯한 자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문제들에 관한 지나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우려는 이들 난민들에 대한 혐오 또는 두려움으로 발전하여 난민법 폐지나 난민협약탈퇴까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이미 우리 사회가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전환되어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에 우리와 남을 구별하는 배제와 차별의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난민공포증이나 이슬람포비아와 같은 우려를 가득 실은 여론은 이들 난민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것 자체를 두려움 가득한 시각으로, 언제나 이들이 사회적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대상으로서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에 심한 거부반응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과 태도는 국민정서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우선적으로 난민법 폐지나 난민협약탈퇴는 국제관계에 있어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협약탈퇴 시 국제사회 발언권 약화, 국제적 고립 등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국 중 탈퇴 국가는 없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많은 난민을 수용해왔고, 거액의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보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상황가운데 서있는 한국교회는 난민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들을 선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배제’가 무엇인지 좀 더 정확히 신학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크로아티아 출신 신학자로서 예일대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w Volf’s)는 그의 책 *Exclusion and Embrace: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rness, and Reconciliation*에서 ‘배제와 포용’에 관하여 그 신학적 근거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저지르는 죄악의 많은 부분은 배제하는 행위에 있다고 한다. ‘배제’라는 것은 그 또는 그녀가 타자로서 상호의존적인 방식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³⁷ 여기서 타자란 자신보다 하등한 존재로서 자신과 같아야져 하는 존재이거나 자신에게 지배당해야 하는 존재로 이해된다. 따라서 난민은 공동체의 가치와 안전을 위협하는 자로 인식된다.³⁸

따라서 이러한 사회는 정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의 악함을 깨끗하게 하기를 바라고 보다는 “이 세상이 타자라고 여기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기를 바란다. 악한 마음은 깨끗한 자들을 더러운 자, 정결하지 못한 자로 명하여 사람들을 몰아내고 더러운 자들, 정결하지 못한 자들을 깨끗하게 하고자 돕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37 Miroslaw Volf, *Exclusion and Embrace: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rness Reconciliatio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6), 72.

38 Ibid., 67.

라고 하였다.³⁹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주자나 난민을 향한 이 세상의 폭력은 흔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즉 그들은 위협적이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배제’는 두려움이나 혐오스러움의 감정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려움이나 혐오스러움의 감정이 ‘우리’와 ‘남’을 구별하는 ‘배제’와 ‘차별’을 형성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난민선교를 위해서 배제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난민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가야 하는 것일까를 살펴보면 ‘우리’와 ‘남’을 구별하는 적대적 인간관계를 벗어나야 할 것이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적대적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연합 안으로 받아들임을 모델로 하여 우리사회 안에, 우리 안에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에 중립적으로 서있거나, 먼 거리에 있지 않고 그들 곁에서 서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사회적, 종교적 영역을 넘어서서, 배제와 차별, 두려움을 벽을 허물고, 우리 곁에 찾아온 지친 무슬림 난민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안에서 그들을 향한 포용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39 Ibid., 74.

■ 참고문헌

- 김미나. “다문화 사회의 진행 단계와 정책의 관점: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연구.” 『행정논총』 제47권 4호 (2009): 213-233.
- 김영란. “다문화사회 한국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 정책.” 『한국사회』 제14집 1호 (2013): 3-30.
- 이일. “한국 내 무슬림 난민의 현황, 난민제도의 이해 및 한국 기독교 교회의 과제.”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9 no.1 (March, 2016): 79-104.
- 조희원.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 공존과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2015) 『다문화교육연구』 제 6권 5호 621-650.
- 한충희. “전 세계 난민 상황과 정책.”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9 no.1 (March, 2016): 53-7
- Volf, Miroslav. *Exclusion and Embrace: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rness Reconciliatio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6.
- https://www.etimes.net/Service/etimes_2011/ShellView.asp?ArticleID=2018061916333002163 (accessed on 16th Aug. 2018).
- “한국 난민법 5년전 시행... 난민 인정률 4.1%뿐” <http://www.hani.co.kr/arti/PRINT/849797.html>(accessed on 10th July 2018).
- [네이버 지식백과] 무사증 제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6444&cid=43667&categoryId=43667>(accessed on 15th Aug. 2018).
- https://www.etimes.net/Service/etimes_2011/ShellView.asp?Ar-

ticleID=2018061916333002163 (accessed on 16th Aug. 2018).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 (accessed on 3rd Aug. 20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1/0200000000AKR20180701054300082.HTML> (accessed on 17th July, 2018).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32&aid=0002880052>(accessed on 9th July, 2018).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8072002005018> (accessed on 9th Aug. 2018).
https://www.etimes.net/Service/etimes_2011/ShellView.asp?ArticleID=2018061916333002163 (accessed on 16th Aug. 2018).
<https://www.unhcr.or.kr/education/#firstPage> (accessed on 9th Aug. 2018).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17001&plink=ORI&cooper=NAVER(accessed on 5 Aug. 2018).
<http://www.hankookilbo.com/v/5ad9b67609c14670977954a59b05c309> (accessed on 5th Aug. 201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01429&code=61131111&cp=du> (accessed on 9th Aug. 2018).
<https://www.unhcr.or.kr/education/#firstPage> (accessed on 9th Aug. 2018).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5544.html (accessed on 8th Aug. 20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martmview.html?artid=2018062221005&code=620117(accessed on 8th Aug. 2018).

■ ABSTRACT

The Understanding of the Issue of Yemeni Refugees in Korea

Jee Yun Kwon

The issue of refugees is a very serious issue on the global agenda. According to the recent report by UNHCR, there are 685,000,000 homeless people around the world, and more recently, there are an additional 16,200,000 people. From this number we can see that one out of 110 people are expelled refugees or are seeking asylum.

In recent past, a number of 448 Yemeni people entered the Jeju area in Korea without visa in order to apply for refugee status. This is a significant issue in all of Korean society especially in the Jeju area.

There are serious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Yemeni engagement policy in regards to the people who are applying for refugee status in Korea. Furthermore, angry public opinions insist on the abolition of refugee law and participation in the Refugee Convention. Given the angry public opinions, the government

must find answers to the current pressing problem.

More importantly, the public does not want refugees to become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Their understanding of refugees is that they might be potential criminals. These opinions are related to Islamic terrorism as well as the problems seen with refugees in Europe. It is also deeply connected to Xenophobia and Islamophobia.

As a result, there is a division within the Korean community: us and them. Therefore, the refugees are excluded from the society and are discriminated. Despite the fact that Korean society is no longer a monocultural society but a multicultural one, the problem of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still persists throughout the country.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the Yemeni refugees from a Christian mission perspective, how should the church address this issue? Volf's concept of "exclusion and embrace" can provide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n his book *Exclusion and Embrace: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rness, and Reconciliation*, the Croatian theologian, now a professor at Yale, Miroslav Volf, explained that so many of the sins we commit against our neighbor are acts of exclusion. He writes that in order to move from exclusion to embrace, there needs to be moments that provide space for repentance, forgiveness, creating room within oneself for the other and healing of past memories.

The Korean Church should make room to embrace the Yeme-

www.kci.go.kr

ni refugees without exclusion, discrimination, and fear towards Muslim refugees in Korea, despite social and religious obstacles.

Key words: Refugees, Yemeni Refugees, Discrimination, Exclusion and Embrace, Islamophobia